



2024

해외 이사자가 꼭 알아야 할

해외 이사물품 통관 안내서



서울본부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



본 책자는 2024년 5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외 이사자가 국내로 반입하는 이사물품의 세관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민원 편의를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관련 법령 개정, 사실관계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관지 세관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자는 가급적 사전에 통관 전문가 도움을 받아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해외 이사자가 꼭 알아야 할

해외 이사물품 통관 안내서

CONTENTS

PART 1 제도 개요 7

이사물품 통관이란?	8
통관 준비사항	9
단계별 통관절차(흐름도)	11

PART 2 통관 요건 13

이사자 요건	14
이사물품 인정범위	16

PART 3 통관 절차 21

일반 이사물품 통관	22
이사차량(자동차) 통관	25

PART 4 자주 묻는 질문(FAQ) 33

PART 5 참고 사항 37

가산세 및 별칙사항	38
이사물품 운송 관련 피해사례 및 대처요령	39
기타 필요정보	40

**2024 해외 이사자가 꼭 알아야 할
해외 이사물품 통관 안내서**

PART 1



제도 개요

1. 이사물품 통관이란?
2. 통관 준비사항
3. 단계별 통관절차(흐름도)

1

이사물품 통관이란?



개요

- ❖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
- ❖ 이사물품은 통상적으로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하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
- ❖ 서울세관은 이사자 편의와 신속 통관을 위해 통관희망일 사전예약제, 오전 8시 업무개시(오후 5시 업무종료), 세금의 신용카드 납부제(계좌이체) 등의 통관서비스를 제공



이사물품 통관 필수 요건

- ❖ 이사자 입국이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함
(여행, 친지방문, 기타 단순 체류 등의 경우는 제외)
- ❖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 주거를 설정, 외국인(재외영주권자 포함)은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동반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이어야 함. 단, 단기체류자는 거주(예정)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동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 이사물품은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이어야 함(판매용 물품,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한 물품 등 제외)
- ❖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함(해당 이사물품 적재 선박 및 항공기의 국내 입항일 기준)



이사물품 통관 근거 규정

- ❖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1항 제2호
-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49호)
-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38호)
-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50호)
- ❖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수출입의 승인 면제) 별표 4 등

2 통관 준비사항



통관 준비서류

귀국 전

- ❖ 여권
- ❖ 물품구입 영수증(신차구입한 경우 계약서)
- ❖ 거주사실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 이사차량(자동차) 반입 시 본인 또는 동반가족 소유사실 증명 서류*(원본)
 - *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소유증명서>Title, 보존기록증명서(일본의 경우) 등
- ❖ 이삿짐을 포장할 때 작성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귀국 후

- ❖ 운송업체로부터 인수한 이사물품 관련 선적서류*
 - *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L), 화물인도지시서(D/O) 등
- ❖ 본인 및 동반가족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발급
- ❖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사본
- ❖ 기타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본문 24page 참조)

⚠️ 유의사항

- ☑ 고가 물품은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미리 세관에 수출신고 함으로써, 다시 귀국할 때 추가적인 증빙절차 없이 면세처리 가능
- ☑ 따라서, 자동차,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의 보석 등의 고가 물품은 수출신고 시 동일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명, 규격, 제조일련번호(S/N), 차대번호(VIN) 등의 정보를 가능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 관세청장이 지정한 「필수 과세대상물품」 및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은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될 수 있음



통관예약 사전준비

통관지 세관 선택

- ❖ 물품이 도착한 항구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인천·용당·대전세관 中 통관지 세관을 선택하고 보세운송하여 통관 가능

통관 희망일(시간) 선택

-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통관 절차와 창고에서의 이사물품 반출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관희망 날짜·시간 사전예약 필요(※ 일반적으로 운송업체나 관세사가 예약)
- ❖ 이사자는 운송사와 협의하여 통관지 세관(창고) 도착일과 국내 배송일을 고려하여 통관희망일(시간)을 선택하여야함



세금 및 각종 비용 확인

세관에서 징수하는 세금과 수수료

관세 등 세금	- 과세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 ⇒ 관세, 개별소비세(or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자동차 임시번호판 교부수수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대행)	- 임시운행허가기간 : 10일 이내 - 수수료 : 4,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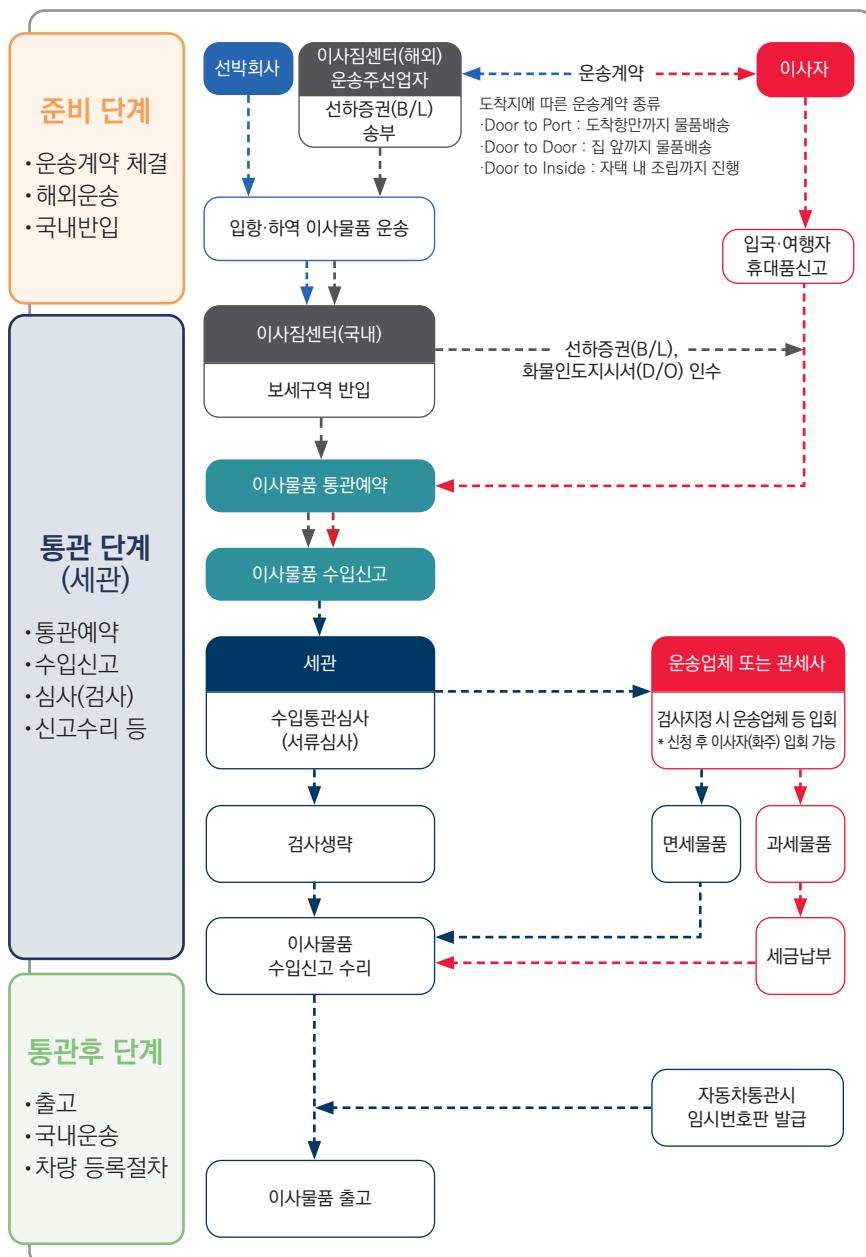
☞ 세관에서는 위 항목 외 다른 비용은 일체 징수하지 않음

화물운송 및 창고보관 비용 (세금 외 별도 비용)

화물운송	- 해외 및 국내 운송업체가 청구하는 비용 ⇒ 운송비 + 하역비 + 보세운송료 + 부두사용료 등
창고보관	- 이사물품지정장치장 화물관리업체(한국관세무역개발원)가 청구하는 비용 ⇒ 화물취급수수료(경비료, 작업료 등) ※ 화물취급수수료는 이사자(화주)가 직접 납부하거나 운송사가 대신 납부 후 화물운송비용과 함께 청구

☞ 운송 및 보관비용은 운송사와 화물관리업체에게 문의

3 단계별 통관절차(흐름도)



2024 해외 이사자가 꼭 알아야 할 해외 이사물품 통관 안내서

PART 2



통관 요건

1. 이사자 요건
2. 이사물품 인정범위
 - 면세 및 과세물품, 세관신고 대상 물품
 - 수입 금지 및 제한 물품

1

이사자 요건



거주기간에 따른 구분

- ❖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은 해외 거주기간, 재외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

이사자

-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 (가족을 동반한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 외국인(시민권자 포함) 또는 재외영주권자
 -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 (가족을 동반한 경우)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할 자

단기체류자

-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자
 - (가족을 동반한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자
 - * 단, 단기체류자의 해외 거주 증빙은 임대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를 통해 확인
- ❖ 외국인(시민권자 포함) 또는 재외영주권자
 -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할 자
 - (가족을 동반한 경우)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할 자

⚠ 유의사항

- ✓ 관세 면제 등의 이사물품 통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자 입국 목적이 거주 이전을 위함이어야 하고, 이사자가 반드시 입국한 상태이어야 함
- ✓ 또한,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제출서류와 자동차 통관절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면세/과세물품’ 17page, ‘자동차 통관’ 25page 참조)



거주(예정)기간 확인

거주(예정)기간 계산

(※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라 초일 불산입)

- ❖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거주기간은 외국에 거주하기 위하여 최초로 출국한 일자부터 우리나라에 다시 거주하기 위하여 최종 입국한 일자까지 외국 체류 기간 계산
 - 일시귀국에 따라 이사자 거주기간 요건(1년, 가족동반 6개월 이상) 미달하는 경우 일시 귀국 사유&기간 등 고려하여 거주이전 비해당 인정 시 일시귀국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
 - 다만, 국내 3개월 이상 연속 체류 시 일시귀국 사유서 및 외국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징구하여 거주이전 여부 확인
- ❖ 외국인(재외영주권자 포함)의 경우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입국심사증, 고용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

동반가족

- ❖ 동반가족이란, 이사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 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한 가족을 말함
 - *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를 말하며 나목의 경우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거주(예정)기간 확인서류

- ❖ 우리나라 국민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 재외영주권자
 - 재외국민주민등록증, 거주예정기간이 명시된 국내 고용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 여권실효확인서, 주민등록등본(영주귀국자의 경우)
- ❖ 외국인(시민권자 포함)
 - 외국인등록증(발급 전에는 여권법에 의한 비자),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거주예정기간이 명시된 국내 고용계약서 등
- ❖ 복수국적자
 - 복수국적 확인서류(기본증명서 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해외거주기간 확인), 거주 예정기간이 명시된 국내 고용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국내거주예정기간 확인)

2

이사물품 인정범위



이사물품이란?

- ❖ 이사자가 입국 시 반입하는 물품 중 세관장이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①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물품
 - ②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 ③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 ❖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 ❖ 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 ❖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 유의사항

- ☒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함



면세 및 과세대상 물품

면세대상 물품

- ❖ 이사자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필수 과세 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
- ❖ 단기체류자 :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 해외에서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면세
- ❖ 단, 아래의 물품은 가족수에 따른 인정수량만 면세

물 품	가족수	인정수량
▶ 내구성 가정용품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은 제외)	1 ~ 2명	5개
	3 ~ 4명	6개
	5 ~ 8명	7개
	9명 이상	8개

필수 과세대상물품(세금부과 대상물품)

- ❖ 선박, 항공기
- ❖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 제외)
-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
- ❖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입국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유의사항

- ✓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제외하고, 필수과세 대상 물품은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임
- ✓ 다만,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다른 서류 (휴대물품 반출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면세

* 서류상 기재된 세부정보(예. 모델·규격란에 모델명, 시리얼 넘버 등)로 반출물품 동일성 확인



세관신고 대상물품

- ❖ 신품 또는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물품
- ❖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인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 ❖ 대리운반물품, 회사물품, 상용 물품, 직업과 관계없는 물품, 과다반입물품 등
- ❖ 수입금지물품 및 수입제한물품

⚠️ 유의사항

- ☑ 상기의 신고대상물품을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물품

- ### 수입금지 물품
- ❖ 현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첨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수입제한 물품

- ❖ 총포화약법 또는 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 ❖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등 마약류
- ❖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농림축산물 및 산동물
- ❖ 야생생물법, 약사법이 규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CITES) 및 이들로 만든 제품 등

⚠️ 유의사항

- ☑ 수입금지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입통관이 불가
- ☑ 다만, 수입제한 물품은 해당 기관의 허가, 승인 등 증명서 제출 시에는 통관 가능

총포·도검 등 위험물품

- ❖ 총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어획총 등
- ❖ 총포의 부품 : 조준경, 총포신, 기관부, 포가, 산탄탄알, 소음기 등
- ❖ 모의총포 :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제조·판매·소지 등 금지
- ❖ 도검 : 칼날길이 15cm 이상 단도 등, 6cm 이상 재크나이프, 5.5cm 이상 비출나이프 등

품 명	기 준															
모의총포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 발사체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 크기</td><td style="text-align: center;">지름 5.7mm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②무게</td><td style="text-align: center;">0.2g 초과</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 운동에너지</td><td style="text-align: center;">0.02kgm 초과</td><td style="text-align: center;">④모양</td><td style="text-align: center;">앞부분이 예리</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⑤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td><td></td><td></td><td></td></tr> </table>				① 크기	지름 5.7mm 미만	②무게	0.2g 초과	③ 운동에너지	0.02kgm 초과	④모양	앞부분이 예리	⑤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① 크기	지름 5.7mm 미만	②무게	0.2g 초과													
③ 운동에너지	0.02kgm 초과	④모양	앞부분이 예리													
⑤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도검	- 칼날 길이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15cm 이상 (칼날 고정식)</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15cm 이하 (칼날 접이식)</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재크나이프 : 날길이 6cm 이상 비출나이프 : 날길이 5.5cm 이상, 45도 이상 자동 펴짐</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기타 6cm 이상</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td></tr> </table> <p>* 칼끝이 둥글거나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 위험성이 없는 것은 제외 ⇒ 날이 서있지 않더라도 칼끝이 뾰족하여 '찌르기'가 가능한 경우 도검 해당</p>				15cm 이상 (칼날 고정식)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15cm 이하 (칼날 접이식)	재크나이프 : 날길이 6cm 이상 비출나이프 : 날길이 5.5cm 이상, 45도 이상 자동 펴짐	기타 6cm 이상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15cm 이상 (칼날 고정식)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15cm 이하 (칼날 접이식)	재크나이프 : 날길이 6cm 이상 비출나이프 : 날길이 5.5cm 이상, 45도 이상 자동 펴짐															
기타 6cm 이상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 반입금지 물품(예시)

캠핑용 칼 (접이식)	- 칼날 길이: 약 10cm - 칼날 서있음, 칼끝 뾰족함 - 재크나이프 형태로 흉기로 사용 될 위험성이 있어 도검 해당	
장식용 칼 (고정식)	- 칼날 길이: 약 20cm - 칼날 서있음, 칼끝 뾰족함 - 단도이며 칼날과 칼끝의 형태로 보아 도검 해당	
모의총포 (BB탄총)	- 외관상 실제 총기 형태 - 특정 부분에 견고하게 부착된 칼라파트가 없어 실제 총기와 식별이 어려워 모의총포에 해당	

❖ 수입제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기준

<p>■ 총포</p> <p>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쓸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이용 포함)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며, 모의총포(예: BB탄총)도 수입제한물품에 해당</p>	 
<p>■ 고정식 도검</p> <p>칼날 길이 15cm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6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p>	 
<p>■ 접이식 도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날 길이 6cm 이상의 재크나이프(칼날을 접어 칼집에 넣을 수 있게 만든 주머니칼) - 칼날 길이 5.5cm 이상의 비출나이프(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p>■ 화약류</p> <p>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 실탄, 공포탄 등</p>	 
<p>■ 분사기</p> <p>가스총이라 불리며, 총포형·막대형·만년필형·기타 휴대형 분사기가 해당</p>	 
<p>■ 전자총격기</p> <p>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총포형, 막대형, 기타 휴대형 전자총격기기 해당 (산업용·의료용은 제외)</p>	 
<p>■ 조준경</p> <p>조준경은 총포의 부품으로써, 조준선 또는 조준점이 있고 조절기능이 있는 것이 해당</p>	 
<p>■ 석궁</p> <p>석궁은 일반형, 도르래형, 권총형이 해당</p>	 

⚠ 유의사항

- ✓ 총포·도검·화약류 등 수입제한 위해물품 관련 해당여부, 수입 허가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추가 문의사항은 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으로 질의할 것

PART 3



통관 절차

1. 일반 이사물품 통관
2. 이사차량(자동차) 통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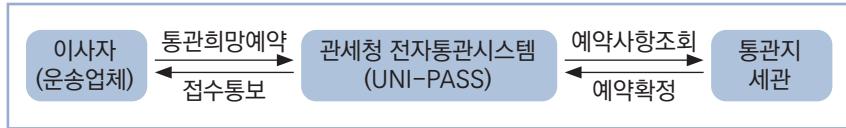
일반 이사물품 통관



통관예약

- ❖ 통관희망일 전날 오후 2시까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직접 접속하거나 운송업체에 위임하여 예약 가능(시간당 예약 가능건수: 이사물품 20건, 자동차 3건)
 - ❖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통관 1~2일전까지 통관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세액산출이 사전에 완료되어 통관대기시간 단축 가능

〈 이사물품 통관예약 절차도 〉



통관예약 절차

- 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 → 회원가입(일반 사용자(개인) 등록, 공동인증서 필요)
 - ② 로그인 후 ‘전자신고⇒신고서작성⇒수입통관⇒이사물품통관 예약신청서’ 클릭
 - ③ 통관예약번호 ‘채번’ 클릭
 - ④ 예약사항 기재 및 저장 후 전송버튼 클릭
 - ⑤ 예약번호 입력하여 예약확인



수입신고

- ❖ 이사물품 수입신고는 신고인(화주 또는 관세사 등) 명의로 화주(이사자)가 직접하거나 관세사에 위임하여 할 수 있으며, 이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가능

신고방법 등의 상세내용은 「이사물품 화주 직접 수입신고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할 것



(매뉴얼 바로가기)

- ❖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 이사자 등의 동반가족, 이사자 등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자가 작성하여야 함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및 위임장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관세행정 》개인 통관 》 해외 이사물품 》이사물품 통관절차 》구비서류(다운로드)



- ▣ 수입신고 시 이사자 해당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입신고서(1단계)와 이사물품 신고서(2단계)를 작성한 후 순서대로 전송하여야 함
 - ▣ FTA 협정세율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 필요
 - ▣ 위임통관 시에도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B/L상의 수하인)이 작성해야 하고, 이사물품이 아닌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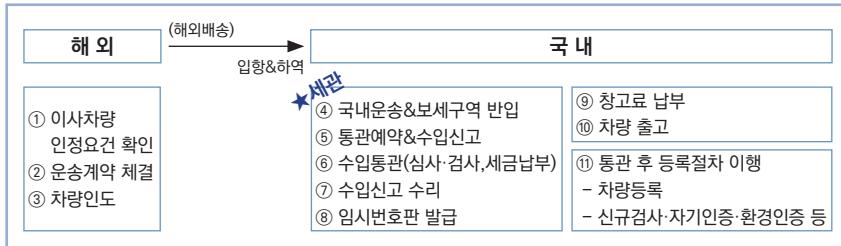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우리 나라 국민	재외 영주 권자	시민 권자	외 국 인	복수국적자		비 고
					우리 나라 국민	시민 권자	
이사물품반입내역서	○	○	○	○	○	○	관세청 홈페이지
여권사본	○	○	○	○	○	○	동반가족 포함
출입국사실증명서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발급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	○	○	○	○	○	동반가족 있는 경우 제출
기본증명서					○	○	복수국적 확인시 제출
재외국민주민등록증		○					행정복지센터 발급
여권실효확인서		○					영주귀국시 제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외국인등록증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고용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		○	○	○		○	거주예정기간 확인시 제출
위임장	○	○	○	○	○	○	위임통관시 제출
선하증권(B/L)	○	○	○	○	○	○	운송업체로부터 인수
포장명세서(P/L)	○	○	○	○	○	○	운송업체로부터 인수
자동차등록증 (임시등록증 포함), 소유증명서, 구입계약서 등	○	○	○	○	○	○	자동차 통관시 원본제출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	○	○	○	○	자동차 통관시 제출

2 이사차량(자동차) 통관



이사차량 통관 절차(요약)



이사차량 통관 요건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

-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 ❖ 가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 이상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하며,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한함
 -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보험증서 등)
 - ❖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의 자동차
 - ❖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

자동차 면세요건

-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로서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유의사항

- ▣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적용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 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하며,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부과 대상에 해당함
(예. 차대번호가 “K”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 미국 앤락바마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 소나타 등)



보유(사용)기간 계산

이사물품 자동차의 보유(사용)기간

- ❖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함
- ❖ 자동차 선적일자가 이사자 입국일자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입국일자가 아닌 선적일자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

〈주요 질의사항〉

1.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 중 일부가 해외에 잔류하는 경우는?
 - 자동차를 계속 사용·소유한 잔류가족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
2.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Lease)하여 사용하다 구입한 자동차는?
 - 리스(Lease)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사용한 자동차(리스계약서 제출 필요)
3. 이사자와 제3자 공동명의 자동차의 이사물품 인정여부는?
 - 수출을 위한 말소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특별히 위법한 정황이 없으면 이사물품 자동차로 인정

자동차 보유기간 확인서류

- ❖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Title)에 의하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일본의 경우 자동차 등록사항 보존기록증명서)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름

〈주요 질의사항〉

1.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 자동차등록사항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
2.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는?
 -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 외에 리스계약서, 보험증명서 원본도 필요
3. 이사차량이 이사자 가족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구비서류는?
 - 가족관계증명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 이상 해외 거주지에서 실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보험증서 등) 필요
 - 다만,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한함



과세가격 결정 및 세액계산

관세의 과세가격

- ❖ 관세의 과세가격 = (정기 발행 자동차가격 책자의 게재 신차가격 ×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 ❖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 구입 가격자료(원본)를 제출할 경우 검토 후 과세가격으로 인정가능

과세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가격자료

- Kelley Blue Book : 미국 내 자동차의 시세기준을 제시하는 자동차 가격표
 - * 인터넷 사이트 주소 : www.quickvalues.com
- Red Book : 일본 내 자동차의 시세기준을 제시하는 자동차 가격표
- SCHWACKE : 유럽 내 자동차의 시세기준을 제시하는 자동차 가격표

감가상각잔존율이란?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잔존비율*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 제2호 자동차 감가상각 잔존율표

이사물품 자동차 예상세액

- ❖ 일반적인 이사물품 자동차 세액(관세 및 기타세액)은 과세가격의 약 26% 정도이지만, 이는 개략적인 비율이며 List Price, 운임, 보험료, 환율, 차량최초등록일, 수입신고일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납부세액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관 세(A)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율(8%)
 - 개별소비세(B)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A)] × 개별소비세율(5%)
 - 교 육 세(C) : 개별소비세(B) × 교육세율(30%)
 - 부가가치세(D) : [과세가격 + 관세(A) + 개별소비세(B) + 교육세(C)] × 부가가치세율(10%)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의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 시점

- ☞ 최초 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 확인자료 상의 등록일
 - 미국, 캐나다에서 반입된 자동차의 경우 인터넷(www.autocheck.com 또는 www.carfax.com 등)에서 최초 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음(유료사이트)
 - 최초 등록일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제작년도의 말일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2023.8.10. 기준)

(단위 : %)

차종 구분	내용 연수	경과 연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0	100.0	97.50	95.00	92.50	90.00	87.50	85.00	83.63	82.27	80.90	79.53
승 용 차	12 년	1	76.80	75.82	74.83	73.85	72.87	71.88	70.90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00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6.08	55.19
		3	54.30	53.48	52.67	51.85	51.03	50.22	49.40	48.58	47.77	46.95	46.13	45.32
		4	44.50	43.73	42.97	42.20	41.43	40.67	39.90	39.13	38.37	37.60	36.83	36.07
		5	35.30	34.58	33.85	33.13	32.40	31.68	30.95	30.23	29.50	28.78	28.05	27.33
		6	26.60	25.95	25.30	24.65	24.00	23.35	22.70	22.05	21.40	20.75	20.10	19.45
		7	18.80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0	13.03	12.75	12.48	12.20	11.93	11.65	11.38	11.10	10.83	10.55	10.28
		9	10.00	9.92	9.83	9.75	9.67	9.58	9.50	9.42	9.33	9.25	9.17	9.08
		10	9.00	8.92	8.83	8.75	8.67	8.58	8.50	8.42	8.33	8.25	8.17	8.08
		11	8.00	7.92	7.83	7.75	7.67	7.58	7.50	7.42	7.33	7.25	7.17	7.08
		12	7.00											
이 륜 자 동 차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자동차 예상세액 조회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개인 통관 » 해외 이사화물 » 자동차 통관절차 »『자동차 예상세액 조회하기』클릭 →
자동차 정보 입력 → 조회
※ 모바일(QR코드)로 예상세액 조회 가능



(예상세액 조회)

화면 설명: 관세행정 사이트의 '자동차 통관절차' 섹션입니다. 왼쪽에는 '자동차 예상세액 조회하기'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텍스트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자동차 통관 절차' 단계별 안내가 표시됩니다.

✓ 입력사항

자동차배기량	<input type="text"/> ※ 자동차 배기량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최초등록일	<input type="text"/> 예)YYYY-MM-DD ※ 자동차 최초 신고 등록일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신차 등록일을 보조설 경우 생산년도의 12월 31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예정일	<input type="text"/> 예)YYYY-MM-DD ※ 수입 신고할 예정일을 입력하십시오.
신차가격	<input type="text"/> ※ 소유하신 차량 연식의 신차가격을 입력합니다. (화폐단위를 생략한 외화가격)
과세환율	<input type="text"/> 신차가격의 외화가격의 원화환율을 입력하십시오. 환율조회
예상운임	<input type="text"/> ※ 신차가격과 동일한 화폐단위로 입력합니다. <지역별 운임 예시> 미국 \$1,600 미국서부 \$1,200 캐나다 \$1,300 유럽 \$1,400 호주/뉴질랜드 \$1,300 일본 \$650 중국 \$450 등남아 \$500 중증 \$1,300 남미 \$1,600 * 정확한 운임은 운송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지역	<input type="button" value="서울"/> ※ 자동차를 등록하는 지역을 선택하여주세요.
자동차 종류	<input type="button" value="민영업종(경차)"/> ※ 취등록세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사자 자격에 따른 자동차 통관 요약

구분		거주(예정) 기간	이사 물품	과세 여부	자기 인증	환경 인증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	이사자	1년 이상	인정	면세	면제	생략 또는 면제
	단기 체류자	단독 3개월 ~1년 미만	불인정	과세	대상	대상
외국산 자동차	이사자	1년 이상	인정	과세	면제	생략 또는 면제
	단기 체류자	단독 3개월 ~1년 미만	불인정	과세	대상	대상

⚠️ 유의사항

- ✓ 자동차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가 적용되고, 자기인증, 환경인증 등의 통관 후 차량등록 절차도 상이하여 등록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반드시 문의 필요(※ 본문 31page 참조)



이사물품 자동차 FTA 적용 신청방법

❖ 통관 시 FTA 적용 신청(일반신청)

신청 부서	신청 시기	제출서류		
		공통	추가	
			한-미 FTA	한-EU FTA
이사물품 통관부서 (물품 소재지 관할세관)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 기본 통관서류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 (제조사O, 판매자(딜러)X)	협정에서 정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 (6,000유로 초과물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및 제17호 서식

❖ 통관 후 FTA 적용 신청(사후신청)

- 신청부서 : 통관지 세관 심사정보부서
-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 (02) 510-1326, 인천세관 심사정보과 ☎ (032) 452-3049
- 신청시기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기본 통관서류, 원산지 증빙서류, 경정청구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기타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 유의사항

- ✓ 원산지증명서 형식, 원산지결정기준, 직접운송원칙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FTA 적용이 가능하며, 증빙 없이 신청 시 통관 후 원산지 검증 시 특혜관세 배제될 수 있음

세관통관 후 절차(※ 타기관 소관업무)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발급(대행)

- ❖ 임시운행허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로서 차량 정식 등록 전 임시운행을 위해 필요하며, 서울세관은 민원 편의를 위해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음
-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임시 운행번호판 교부 [허가기간 : 10일 이내, 수수료 : 4,300원(현금)]
 - 제출서류 : 수입신고필증,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자동차책임보험가입서류*
- *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국내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임시번호판 발급 가능

⚠ 유의사항

- ☑ 정식번호판은 반드시 임시번호판 사용기간 내에 발급(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받아야 하며,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교부 ⇒ 지방자치단체(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
 - ▶ 기간연장 및 정식번호판 발급절차 안내 ⇒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교통행정과

기타 차량등록 절차

신규검사	<p>▶ 자동차 등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검사는 환경인증 및 자기인증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되므로 반드시 시행기관에 절차 등에 대해 문의 필요- 인근 자동차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가능
자기인증	<p>▶ 자동차 형식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물품 통관 자동차인 경우 자기인증면제신청서 작성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 후 확인 필요- 소관기관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www.kotsa.or.kr)-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환경인증	<p>▶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배출가스의 국내법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물품 통관 자동차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이상 이사자는 환경 인증 면제, 가족동반 이사자(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는 한국환경공단에 인증생략 신청 등에 대해 문의 필요- 소관기관 : 한국환경공단(☎ 1833-7435 / www.mecar.or.kr)-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차량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관기관 : 거주지 관할 구청, 군청, 지자체소속 자동차등록사업소- 이사물품 자동차 정식등록 시 지방세(취·등록세) 납부

⚠ 유의사항

- ☑ 세관 통관절차를 마친 이후에 필요한 자동차등록 절차(신규검사, 자기인증, 환경인증, 차량등록)는 세관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관련 세부사항 및 문의사항은 반드시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2024 해외 이사자가 꼭 알아야 할
해외 이사물품 통관 안내서**

PART 4



자주 묻는 질문(FAQ)



일반사항

1. 세관에 이사물품 수입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국내로 반입하는 해외 이사물품의 경우 ①이사자(화주)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 접속 후 게시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직접 수입신고하거나, ②관세사 등의 통관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신고 가능
- ☞ 다만, 관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통관수수료(※ 관세사 직접 문의)는 화주 부담



통관 가능여부

2. 일반 이사물품은 먼저 보내고 자동차는 귀국 전에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화물 도착시기가 다른데 이사물품 통관이 가능한가요?

- ☞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에 도착하는 화물에 한해서는 이사 물품으로 인정되므로, 이 기간 내에만 반입이 된다면 한 번에 통관하는 것도 가능하고 B/L별로 각각 통관하는 것도 모두 가능

3. 영주권자로서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였는데 지금 들여오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지요?

- ☞ 이사물품 인정받기 위해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국일(또는 아래 해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에 도착(이사물품 적재 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일 기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면 이사물품으로 불인정

* ①입국 후 영주권포기자(영주권포기일), ②귀화자(외국국적밀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 취득일), ③국적회복자(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4. 개인사정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데 이사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할까요?

- ☞ 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사자 등이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하는 물품이 외국에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물품일지라도 관세법령에 의한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음

5. 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던 사무용 집기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려는데 면세가 가능한가요?

- ☞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했던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하지만 물품의 종류·수량이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나 사업상 사용하던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임

수입 제한물품

6. ‘아이들이 사용하던 장난감’도 모의 총포에 해당하나요?

- ☞ 모양이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인명·신체상 위해 우려가 있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의총포 상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모의 총포에 해당함
- ☞ 외형, 위험 가능성 등이 명확하게 모의 총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모의 총포로 의심되는 경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육안 확인 또는 기술적 시험을 통해 판단(※ 소요비용은 화주 부담)

7. 장식용 또는 캠핑용 칼은 이사물품으로 통관 가능한가요?

- ☞ 칼날이 서있거나 칼날이 없더라도 끝이 뾰족하여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허가 대상인 도검으로 수입제한물품에 해당하며, 담당 기관의 허가, 승인 등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통관 가능. 또한, 장식용·레저용 등의 칼도 허가 대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담당 기관에 문의(경찰청 ☎ (031) 950-2347)

이사차량(자동차) 관련

8. 이사자가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이사차량으로 통관하는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 ☞ 차량에 부과되는 정확한 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초등록일, 신고예정일(수입 신고일), 차량신차가격, 예상운임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대략적으로 관세 과세가격 [(Blue Book 등 계재 신차가격 ×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의 약 26% 정도의 세금이 부과됨
-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예상세액조회-이사화물 자동차’)를 통해 간단하게 예상세액을 조회하여 확인 가능

9. 4인 가족으로 해외 거주하며 자동차 2대를 보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 2대 모두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나요?

- ☞ 이사물품으로 통관가능한 자동차는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만 인정. 2대 이상을 반입하는 경우 1대는 이사물품으로 통관 가능하나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함

10. 미국에서 타던 중고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면서 한·미 FTA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 이사자가 해외에서 타던 중고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려면 ‘이사자 요건’과 ‘이사물품 요건을 충족하는 승용자동차’임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만약,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통관서류 외에 협정관세적용 신청서와 원산지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 통관단계에서 제출서류를 통한 심사(간이검증)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형식, 원산지 결정기준, 직접운송원칙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협정관세 적용 가능
- ☞ 다만, 협정적용에 필요한 기준 미충족 시 협정적용이 배제될 수 있고 원산지 위험 가능성성이 확인되면 통관 후 관련 부서에 원산지 검증의뢰 될 수 있음
- ☞ 참고로, 수입통관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통관지 세관 심사정보 부서에 사후신청 가능

11. 이사차량으로 통관하기 위해 반입하였으나 ‘이사차량 요건 불충족 또는 단기체류자가 반입한 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해야 함
- ☞ 일반 수입통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일지라도 과세되며, 통관 후 관련 법규에 따른 차량등록 절차(자기인증, 환경인증 등)가 상이하고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기관으로 반드시 문의 필요(※ 본문 31page 참조)



기타 사항

12.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밟은 후 창고·경비료를 납부해야 출고가 가능하다는데 징수주체 및 비용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 현재 세관이 지정한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지정장치장 관리 및 통관예정 화물을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통관절차를 마친 화물 출고 시 일정 수수료(경비료, 작업료)를 부과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서울 ☎ (031) 997-4634 ▶ 부산 ☎ (051) 611-0541 ▶ 인천 ☎ (032) 888-2816

PART 5



참고 사항

1. 가산세 및 벌칙사항
2. 이사물품 운송 관련 피해사례 및 대처요령
3. 기타 필요정보

1

가산세 및 벌칙사항



불성실신고 가산세 부과

- ❖ 이사물품 수입신고 시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세로 징수



관세법 벌칙 규정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 ❖ 다음 물품을 반입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때
 -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또는 개인용/가정용이 아닌 물품
 -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가족 수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과다한 물품
- ❖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 ❖ 이사물품반입내역서의 기재사항 중 통관 여부, 면세 여부 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때 ⇒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운송업자에 대한 처벌

- ❖ 운송업자가 이사자등과 제3자의 물품이나 상용물품 등을 혼적하거나 은닉하여 운송한 때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기타

- ❖ 물품의 수량, 포장방법,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FTA관세법 벌칙 규정

원산지 증명서 부정발급에 대한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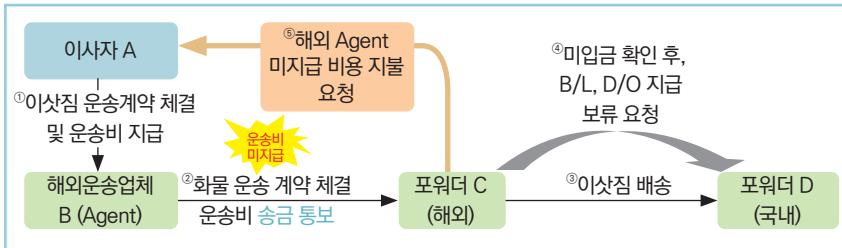
- ❖ 원산지 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5년간 보관하지 않는 자 등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과실로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발급한 자 등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이사물품 운송 관련 피해사례 및 대처요령



최근 피해사례



- ① 이사자A는 미국 해외운송업체B(Agent)와 이삿짐 운송계약을 하고 운송비 \$2,800 지급
- ② 해외운송업체B가 포워더C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송비를 송금하였다고 거짓 통보
- ③ 포워더(해외)는 입금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으로 이삿짐을 배송
- ④ 포워더(해외) 확인 결과 해외운송업체 입금내역이 없어 국내 포워더D에 B/L, D/O 지급보류 요청
- ⑤ 포워더(해외)는 이사자(A)에게 해외운송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화물을 인도할 수 있음을 통보



이사물품 피해유형별 대처요령

피해유형	대처 요령
손상 파손 오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고증빙 확보 : 사진, 손상정도 확인자료 확보 ② 서면 사고통보 : 모든 책임당사자에게 서면상의 사고 통보서한 발송 (B/L, 보험증권 원본, Packing List 등) ③ 손해액 평가, 산정 : 전부손실(보험증권상 가입금액), 부분손해(수리후 영수증, 수리전 견적서)
분실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고증빙 확보 : 화물인도지시서(D/O)에서 확인된 내용이 가장 중요 하므로 인도 시 반드시 수량 확인 · 서명 ② 서면 사고통보 : 모든 책임당사자에게 서면상의 사고통보서한 발송(B/L, 보험증권 원본, Packing List 등) ③ 손해액 평가, 산정 : 전부손실(보험증권상 가입금액), 부분손해(수리후 영수증, 수리전 견적서)

⚠️ 유의사항

- 이사는 운송업체 선택과 계약서 세부내용 확인에 더욱 유념하여야 하고, 포워더는 해외 불성실 통관업체에 주의하고 파트너 선정 시 민원발생업체나 고의적 피해보상 지연 업체는 가급적 배제하여 신뢰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기타 필요정보



국제 이사회물 통관센터 근무시간

- ❖ 일반관공서보다 1시간 빠른 오전 8시 업무개시
 - 업무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



이사물품 통관 관련 문의처

-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홈페이지 접속 → 관세행정 → 개인통관 → 해외 이사물품)
-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법령안내) 국번없이 ☎ 125(해외 82-2-3438-5199)
(국번없이 '125'번 통화 → 관세상담 '20'번 → 이사자물품 '3'번 입력 후 문의)
- ❖ 서울세관 민원안내 ☎ (02) 510-1114 → 2번 → 3번
- ❖ 국제이사회물통관센터 ☎ (02) 510-1188
Fax : (031) 983-0183, 전자 Fax : (02) 2015-7827



창고보관 문의처

- ❖ 해상운송으로 보낸 이사물품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울국제이사회물지사
 -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아라육로58번길 17 ☎ (031) 997-4634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지사
 -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9 ☎ (032) 888-2816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산지사
 -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23 ☎ (051) 611-0541
- ❖ 항공운송으로 보낸 이사물품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공항지사
 -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5 ☎ (032) 740-4996



「서울세관 국제 이사화물 통관센터」찾아오는 길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8번길 17(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20)
* 김포공항에서 약 7km 거리

❖ 전화 : ☎ (02) 510-1188

❖ 교통편

《자가용》 네비게이션 목적지: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 또는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 * 올림픽대로 → 경인항(김포)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 아라육로를 따라 1.25km 이동 → 경인항 방면으로 우회전 → 아라육로58번길을 따라 이동 → 청사 도착
- * 강변북로 → 신행주대교 진입 → 개화IC에서 경인항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 금포로를 따라 이동 → 경인항 방면으로 좌회전 → 아라육로를 따라 583m 이동 → 경인항 방면으로 우회전 → 아라육로58번길을 따라 이동→ 청사 도착

《대중교통》

- * 5호선 송정역 중앙 정류장 (60-3, 388, 88, 1002, 60, 2번 버스)
 - ‘아라대교 정류장’ 하차 → 도보 약 10분 소요
- * 9호선 개화역 2번 출구 정류장 (16-1번 버스)
 - ‘이사화물통관센터’ 하차 → 도보 약 3분 소요

2024

해외 이사자가 꼭 알아야 할 해외 이사물품 통관 안내서

발행일 2024년 5월

발행처 서울본부세관
T. 02-510-1114

편집 서울본부세관 통관국 이사회물과
디자인 (사) 성원 / 디자인 뜰